

# 수입불합격 판정 녹용, 국내시장 버젓이 유통

- 제3국으로 위장 반출 후 국내 시장에 유통시켜 -

경찰청 외사과는 지난 6월 6일 품질이 낮아 수입부적합 판정된 수입녹용 등을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약사법위반 등)로 한약재 수입상 정모(49)씨를 구속하고 조모(42), 남모(42)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돈을 받고 이들에게 약사면허증을 대여해준 혐의로 약사 조모(74)씨를 불구속입건하고 백모(33.여), 김모(25.여)씨 등 약사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수입한 뉴질랜드산 생녹용 25t, 15억여원어치와 러시아산 사향 8kg, 1억 7천여만원어치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검사에서 모두 부적합판정을 받았는데도 이를 반송·폐기하지 않고 이 중 사향 전량과 녹용 1.1t를 국내 제약사, 한의원 등에 판매한 혐의다.



남씨는 뉴질랜드산 수입녹용 1.5t, 8억 여원어치가 부적합판정을 받자 홍콩에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 반출한 뒤 통관세

2억여원을 환급 받았고,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녹용가공약재를 제조하면서 약사 조씨에게 월 100만원을 주고 약사면허증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 등은 불합격 녹용의 사용을 막기 위해 식약청이 녹용을 봉인으로 봉했는데도 이를 뜯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녹용에 대해 30일 이내에 해외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해야 함에도 주무부서인 식약청이 현장 확인을 거의 하지 않는 점, 또 이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됐을 때에도 형량이 가볍다는 점 등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합 수입녹용을 반송·폐기조치하지 않고 유통시킨 사건은 지난해 초(싯가 71억원어치 부적합 수입녹용 유통)에도 발생한 바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러한 불법행위는 당분간 극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 내용은 공중파 방송 3사를 통해 주요 뉴스시간에 보도돼 녹용 절각철을 맞이한 국내 양록농가에 적지 않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 경주지회 이근우 지회장은 “방송을 접한 소비자들이 외산 녹용은 믿지 못하겠다며 국산 녹용 구입을 희망하는 전화가 방송 이후 부쩍 늘었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은 물론, 이같은 내용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일도 국산녹용의 판로확보를 위해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 의견을 피력했다. 